

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

수신자 장성군수, 장성군의회 의장
(경유)

제 목 2023~2026년도 장성군의회 의정비등 결정 통보

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~2026년도 장성군의회 의정비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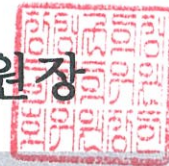
○ 결정내용

구 분	결 정 내 용
2023년도 월정수당	2022년도 월정수당에 1.4% 인상하여 반영
2024~2026년도 월정수당	지방공무원 보수를 적용
2023~2026년 의정활동비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금액

끝.

선결	의 장	조재진	지 시		
접 수	일자 시간	2023. 10. 04	결 재 공 랐	의정비심의위원장	한소영
	번호	4-13		의정비심의위원	Boyer
처리과	의정사무과				
담당자	이동찬				
협 조					

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



간사

신지영

위원장

조복래

협조자

시행 장성군의정비심의회-1(2022.9.29) 접수

우

전화

전송